

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9. 2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9월 10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9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9. 20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청소과장 김방옥)

가. 제안이유

'91. 3.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, 시행으로 '93. 6. 3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, 시행(부산직할시 조례 제3020호)됨에 따라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행해 오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자치구 자체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,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일반 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의 대행 :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 수집·운반, 처리를 함에 있어 수집·운반은 수집·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)
- 수집·운반수수료 부과징수 :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, 건물 등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집·운반수수료를 부과,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: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- 과태료의 부과 : 일반폐기물의 무단투기자, 종류, 성상별 미분리보관자, 조치 명령 위반자에

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(전문위원 : 심완택)

본 조례안은 일반 폐기물의 분류 체계가 종전의 발생원에서 성상에 의한 분류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일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처리 책무가 자치단체에 주어지고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과 수수료 부과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 등 일반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보존과 위생저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된다고 생각됨.

'92년 청소관리 예산이 2,647백만원이었으나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정수액이 891백만원으로서 자립도는 33.66%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존의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며, 일반가정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부과함으로써 자립도가 현재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